

서울가정법원

결정

사건 [redacted] 이행의무위반

의무자
(피감치인)

[redacted]

이행의무의 내용 : 이 법원 [redacted] 이행명령에 따라 2022. 4. 22.까지 사건본인 [redacted] 및 [redacted] 를 인도할 의무

주문

의무자(피감치인)에 대하여 감치 30일을 명한다.

다만,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.

감치장소를 [redacted] 구치소로 정한다.


이유

의무자(피감치인)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2. 10. 19.

판사

박기주

박기주 

◇ 유 의 사 항 ◇

1. 이 재판의 선고일(감치재판 선고 시에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)부터 3일 이내에 이 법원에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.
2. 이 재판은 법정에서 고지되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열람응

등본입니다.

2022. 10. 21.

서울가정법원

법원주사 김용진 (인)

